

# 1111 이사회 운영규정

제정 '12. 11. 6    개정 '17. 5. 29  
개정 '17. 9. 21    개정 '19. 11. 13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회사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의 세부적인 운영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적용범위)**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**제3조(권한)** 이사회는 법령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 및 회사의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한다.

## 제2장 구 성

**제4조(구성)** ①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.

**제5조(의장)** 이사의 의장은 대표이사가 되고 의장은 회의를 주재하며, 의장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사 중 선임연장자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.

## 제3장 회 의

**제6조(소집)** ①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.

②정기이사회는 1월, 3월, 12월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③임시이사회는 긴급한 의안이 있을 때 개최한다.

**제7조(소집절차)** ①의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부서는 이사회 소집요청서와 부의안건을 이사회 운영 담당임원을 통하여 대표이사에게 제출한다.

②주관부서장은 이사회 부의안건의 내용을 검토 후 대표이사의 승인을 얻어 장소, 일시, 안건 등을 명시하여 이사회 소집통지서와 의안을 회일로부터 3일전에 통지하여야 한다. 단, 긴급한 사항으로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회의 1일전까지 단축할 수 있다.

③이사회는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를 있는 때에는 전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할 수 있다.

**제8조(제안 및 의안설명 등)** ①이사회의 의안은 대표이사 또는 각 이사가 제안한다.  
②대표이사 이외의 이사가 의안을 제출하고자 할 때에는 그 취지를 대표이사에게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.  
③부의된 의안의 설명은 당해 의안의 주관이사가 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 필요에 따라 임직원에게 대행시킬 수 있다.

**제9조(성립과 의결)** ①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 
②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·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.  
③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. 이 경우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사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.

**제10조(부의사항)** 이사회에 부의 및 보고할 사항은 별표1과 같다.

**제11조(긴급사항)** ①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의장이 다른 이사 3분의 2이상의 동의를 얻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.  
②전항에 의거 긴급 조치한 사항은 다음 이사회에 보고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**제12조(관계인의 참석)** 의장은 필요시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참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**제13조(의사록)** ①이사회 제안부서장은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 의사록을 작성하며, 이사회 주관부서장이 의사록을 최종검토 후 확정한다.  
②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, 경과요령, 그 결과, 반대하는 이사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, 출석한 이사 및 감사는 이사회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.  
③의사록 원본은 이사회 주관부서에서 보관하며 사본은 당해 업무 소관부서에서 보관한다.

## 제4장 보 칙

**제14조(전문가 조력)**이사는 이사회 결의로써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.

## 부 칙

이 규정은 '19. 11. 13부터 개정, 시행한다.  
이 규정은 '17. 9. 21부터 개정, 시행한다.  
이 규정은 '17. 5. 29부터 개정, 시행한다.  
이 규정은 '12. 11. 6부터 개정, 시행한다.

< 별표1 >

## 이사회 부의 및 보고사항

### [이사회 부의사항]

#### 1.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

- (1) 정기 및 임시주주총회의 소집결정
- (2) 재무제표의 승인
- (3) 정관의 변경
- (4) 이사, 감사의 보수와 성과금 및 퇴직금에 관한 사항
- (5) 이사, 감사의 선임 및 해임
- (6) 자본의 감소
- (7)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 양도
- (8)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등
- (9)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
- (10) 기타 관련법령상 주주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

#### 2. 경영에 관한 주요사항

- (1) 중장기 사업계획 승인
- (2) 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
- (3) 이사회운영규정 개정 및 폐지
- (4) 집행임원의 주요직책 임명승인
- (5) 이사,감사의 보수 및 성과금에 대한 세부운영기준
- (6) 집행임원의 보수 및 성과금에 관한 사항

#### 3. 투자 및 재무에 관한 사항

- (1) 사내투자(자본금의 20% 초과), 사외투자(자본금의 10% 초과) 계획의 승인
- (2)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, 중요한 투자 자산의 취득 및 처분(자본금의 10% 초과, 유형 및 무형 고정자산, 중요한 투자 자산 단위당 장부가액기준)
- (3) 사채 모집, 전환사채 발행사항 결정, 신주인수권부 사채 발행사항 결정, 차관도입
- (4) 출자회사 담보, 보증 등의 채무부담 인수
- (5) 이익잉여금 처분 결정, 준비금 자본전입 결정
- (6) 재무제표에 대한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
- (7) 지급보증
- (8) 장기자금 차입
- (9) 결손처분(1억원 이상)
- (10) 기부찬조(1천만원 초과)

#### 4. 기타

- (1)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11조의 2에 의한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한 거래행위(자본총계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의 100분의 5이상 이거나 50억원 이상)
  - (가)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
  - (나) 주식 또는 회사채 등의 유가증권
  - (다)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
- (2) 공정거래 자율준수관리자 선임 및 해임
- (3) 기타 관련법령상 이사회에 결의를 요하는 사항
- (4) 국내외 지점, 출장소, 사무소 및 현지법인의 설치·이전 및 폐지
- (5) 기타 업무집행과 관련하여 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안으로 제출하는 사항

#### [이사회 보고사항]

- 1. 출자회사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
- 2. 관련법령상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
- 3.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